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97

발의연월일: 2025. 5. 13.

발 의 자:위성락·정태호·윤호중

임호선 · 장철민 · 이훈기

서영석 · 남인순 · 박홍배

민홍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합동참모의장 외의 대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대장은 원수(元帥)를 제외하고 장성급 장교가 오를 수 있는 최고 계급으로,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므로 대장 임명 시에도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1항후단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위성락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0498호) 및 「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49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참모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대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에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참모총장 등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참모총장이나 대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9조(참모총장 등의 임명) ① -제19조(참모총장 등의 임명) 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 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, 해병 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 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 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 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 <후 -----. 이 경우 참 모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 단 신설> 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.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20조(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제20조(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등) ① -----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, 국방부장관은 제청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 하며, 대통령이 임명한다. <후 -----. 이 경 단 신설> 우 대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

	에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	
	청문회를 거쳐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